

『구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미시장

2.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1.9) 및 시행(“22.3)에 따라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구미시 역할 구체화 및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 제도·시책 추진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2050 탄소중립 비전 및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 (안 제6조)

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행 근거 규정 (안 제7조)

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체계 심의 (안 제8조)

라.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시행 근거 규정 (안 제9조)

마.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지정 근거 마련 (안 제11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5. 검토의견

- 본 「구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21.9)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와 관련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조례로써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